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2535
------	------

2025. 4. 24.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왕정순 의원(찬성자 25명)

2.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3.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30회 정례회】

- 제3차 기획경제위원회(2025. 4. 2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왕정순 의원)

1. 제안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이나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8호 신설).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3).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III. 검토의견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구축하고자 발의됨.

2. 소상공인 산업재해보상보험 지원 필요성

-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활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사회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에 따라 운영됨(참고자료1).
- 현재 산재보험은 근로자 보호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가입 및 보험료 전액 사업주 부담 방식인 반면,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1인 자영업자 포함)와 그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무급가족종사자는 임의가입과 보험료 전액 자부담 방식임.
- 그리고 이러한 임의가입 구조 및 보험료 자부담으로 인해 2021년 기준 산재보험 가입 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함(참고자료2).¹⁾
- 또한 소상공인이 속하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비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요양자(43.8%) 및 재해사망자(38.5%)의 비중이

1) 서울시는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을 0.375%로 추정하고 있으나, 가입자 수(2023년 말 기준)와 소상공인 수(2021년 말 기준)의 측정 시점이 달라 가입률 산정에 오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동 보고서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검토보고서의 전국 중·소기업 사업주의 보험 가입률을 인용함.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 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참고자료2).

- 이에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 9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²⁾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³⁾, 이에 서울수도 2025년 본예산에 관련 예산 2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사업 개요 >

▶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 지원 - 기준보수액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지원
▶ 사업수행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
▶ 지원절차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확정	⇒	산재보험료 지원 (분기별 환급)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 참고로 현재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6개의 광역자치단체와 1개의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실시 중임.

< 지방자치단체 산재보험 지원사업 현황 >

구분	지방자치단체	지원시작일	지원대상	지원내용
광역 (6)	경상남도	2020.1.1.	1인 자영업자	• 30% ~ 50%(3년)
	경상북도	2023.11.3.	1인 자영업자	• 전 등급 40%(1년)
	대전광역시	2021.1.1.	1인 자영업자	• 전 등급 50%(3년)
	강원도	2019.1.1.	1인 자영업자	• 전등급 50%
	부산광역시	2020.1.1.	모든 소상공인	• 30% ~ 50%(3년)
	광주광역시	2021.9.1.	1인 자영업자	• 30% ~ 50%(3년)
기초 (1)	곡성군	2021.3.1.	1인 자영업자	• 30% ~ 50%(3년)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정부는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2025년에는 관련 예산을 미편성함.

3.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의 근거 마련

- 동 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을 신설(안 제8조제8호)하고 영세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사업에 산재보험 지원을 명시(안 제10조의3)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7의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8. (생략)</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p> <p>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시장에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p> <p>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p> <p>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p> <p>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p>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 -----.</p> <p>1. ~ 7의2. (현행과 같음)</p> <p>8. <u>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p>

- 먼저 안 제8조제8호는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 범위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 지원’ 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소상공인 고용보험 지원 사업과 동 개정조례안에 따른 산재보험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임.
- 또한 안 제10조의3은 영세소상공인의 보험료 지원사업에 「산업재해보상 보험법」에 따라 산재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이는 소상공인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입법조치임.
- 특히 산재보험은 서울시가 기추진 중인 고용보험과 함께 소상공인의 업무상 재해와 폐업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2025년도 본예산에 이미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는 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에 따라⁴⁾ 법적 근거 마련 후에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법적 근거 없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에서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4)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과 관련된 법령과 조례는 반드시 사전에 제정된 후에 예산을 의결하여야 하며, 중앙정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은 승인절차를 이행하고 예산을 편성,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Ⅵ.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의원 전원 찬성)

Ⅶ.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왕정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35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왕정순 의원(1명)

찬 성 자: 김영철, 김원태, 김춘곤,
민병주, 박수빈, 박승진,
박칠성, 봉양순, 송도호,
송재혁, 신복자, 오금란,
유정인, 유정희, 이민옥,
이상훈, 이용균, 이원형,
이종태, 임종국, 정준호,
최민규, 최재란, 한 신,
홍국표 의원(25명)

1. 제안이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2021년 기준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입률은 0.62%에 불과하며,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발생 비율이 높은 실정이나 소상공인은 보험료 부담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의 산재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소상공인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8호 신설).

- 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0조의3).
- 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신청시 요구되는 서식을 삭제함(안 별표).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

[별표] 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p>1. ~ 7의2.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8. (생략)</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 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p>	<p>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 ----- ----- -----.</p> <p>1. ~ 7의2. (현행과 같음)</p> <p>8. <u>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보험료의 지원</u></p> <p>9. (현행 제8호와 같음)</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p>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직접 시장에
 게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별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삭 제>

[별지 1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양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	------

신청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생 년 월 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이 메 일			
	사업장명 (업 종)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	-	
	사업장 주소 등	주소() 업종() 전화번호 (☎ - -)				

기준보수 등급	() 등급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년	월	일
지원금 지급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 (신청인)	계좌번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제1항
 및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민원인 제출서류	1.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금융정보(입금계좌확인정보) 제공 동의

1.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민원인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제4항에 따른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기재하여 주십시오.(동의를 경우 필요 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번호 :

민원인 (서명 또는 인)

2. 본인은 금융기관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1항에 따라 입금계좌확인정보(입금이 가능한 계좌인지 여부)를 이용기관에 업무처리 완료시까지 제공하지 않는 것에 동의합니다.

민원인 (서명 또는 인)

[별지 2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40조의2)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제2항제1호, 제3항)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살펴보신 후 동의 여부에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의 지원 적합여부 결정 및 지원 금액 확인
- (보유·이용 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수집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수 집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명, 사업주 연락처(휴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계좌번호, 기준보수등급, 상시근로자 수, 사업장주소, 이메일, 가입일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에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㉔ 개인 및 사업장 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받는 자) 근로복지공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신청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기준보수등급, 가입유지 확인 및 신청 사업장의 지원 적합여부 확인
- (보유 및 이용기간) 신청자의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종료시까지
- (제공항목 등) 아래와 같이 개인 및 사업장 정보 등을 제공·이용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제 공 항 목	동 의 여 부	
성명, 사업장명,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일, 기준보수 등급, 지원자의 고용보험 납부실적	<input type="checkbox"/> 동의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인)

서울특별시 및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귀하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1. 비용요소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8조(경영 및 창업지원) 및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을 규정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

2. 세부추계내역

- 총비용(합계) ≍ 1,460,000천원(연평균 292,0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지출	○ 제8조 및 제10조의 3	292,000	292,000	292,000	292,000	292,000	1,460,000
	소계(a)	292,000	292,000	292,000	292,000	292,000	1,460,000
수입	-	-	-	-	-	-	-
	소계(b)	-	-	-	-	-	-
□ 총 비용(a-b)		292,000	292,000	292,000	292,000	292,000	1,460,000

*출처: 서울시 소상공인정책과(붙임1)

- 지원대상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
- 지원목표 : 1,000명/1년
- 지원내용 :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 환급 지원
 - 기준보수액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지원
- 소요예산 : 연 292,000천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안) >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준보수액	2,440,633	2,932,530	3,424,430	3,916,320	4,408,220	4,900,120	5,392,020	5,883,920	6,375,820	6,867,710	7,359,610	7,851,515
보험료(월)	35,877	43,108	50,339	57,570	64,801	72,032	79,263	86,494	93,725	100,955	108,186	115,417
지원금액(월)	17,939	21,554	25,170	28,785	25,920	28,813	31,705	34,597	28,117	30,287	32,456	34,625
지원율	50%				40%				30%			

* 보험요율 : '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업종별 상이) 1.47% 적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77호, 2024.12.30.)

** 월보수액 :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7호 2024.12.30.)

【 지원 예시 】

기준보수 1등급 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평균요율 1.47% 적용)

- 서울시 지원금액 : 기준보수월액 2,440,633원*1.47%(보험요율)*50%(서울시 지원율)=17,939원(월)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의원발의 추진

소상공인정책과장 : 한정훈 ☎2133-5530 소상공인지원팀장 : 장정미 ☎5538 담당 : 박성철 ☎5159

소상공인 산재보험 지원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복귀를 촉진하여 사회안전망 강화에 기여

□ 추진근거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 ※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2024.1.9. 개정, 2024.7.10. 시행)에 따라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

(서울시 조례 근거 없음)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5년간 매월 납부보험료의 30%~50% 지원하기 위한 '25년도 신규사업 예산(292백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산재보험지원에 대한 조례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25년 편성예산 교부가 어렵다는 의견(예산담당관)으로 조례개정이 시급함.

□ 추진배경

○ 산재보험은 영세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필수 과제이나, 제도적 지원이 부족하여 가입률 저조한 실정

- 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은 임의가입으로, 가입의 강제성, 보험료 부담구조 (사업주가 본인분 전액 부담) 등에서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음
- ※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 가입률 : 0.36%(5,622명, 전국 0.58%)

○ 소상공인 사업주는 임금근로자와 동일한 작업재해에 상시 노출되어 있으나,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제도적 보호 필요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은 1.12%로 전체 사업장 산업재해율 평균 0.65%의 1.7배 수준 * 중소기업기본통계(2022) 및 고용노동부 산업재해현황분석(2023)

✓ 월세 내기도 빠듯... 자영업자 99% 아파도 산재보험 가입 안한다 (2024.10.2.주 국민일보)

- * 영세 자영업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저조한 가장 큰 원인은 보험료 부담 때문
- * 법률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2025년 정부예산안에 산재보험료 지원예산은 전무
- * 산재보험료 지원예산 편성 추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

□ 추진경과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 지원근거 마련 : '24.7.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신설 협의 완료 : '24.9.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 '24.11.

□ 사업개요

- 지원대상: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상공인
- 지원목표: 1,000명('25년)
- 지원내용: 최대 5년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50% 환급 지원
- 기준보수액 1~4등급 50%, 5~8등급 40%, 9~12등급 30% 지원
- 소요예산: 292백만원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서울시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안) >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기준 보수액	2,440,633	2,932,530	3,424,430	3,916,330	4,408,230	4,900,130	5,392,030	5,883,930	6,375,830	6,867,730	7,359,630	7,851,530
보험료 (월)	35,877	43,108	50,339	57,570	64,801	72,032	79,263	86,494	93,725	100,955	108,186	115,417
지원 금액 (월)	17,939	21,554	25,170	28,785	25,920	28,813	31,705	34,597	28,117	30,287	32,456	34,625
지원율	50%				40%				30%			

* 보험요율 : '25년 산재보험료 평균 요율(업종별 상이) 1.47% 적용(고용노동부 공고 제2024-77호, 2024.12.30.)

** 월보수액 : 가입자가 1~12등급 중 선택(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67호 2024.12.30.)

【 지원 예시 】

기준보수 1등급 산재보험 가입자의 경우(평균요율 1.47% 적용)

- 서울시 지원금액 : 기준보수월액 2,440,633원*1.47%(보험요율)*50%(서울시 지원율)=17,939원(월)

○ 지원절차



□ 조례 개정(안)

- 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주요 개정내용(안):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안 제10조의3 제1항 개정)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서식이 변경될때 마다 조례개정을 해야되는 비효율을 제거함으로써 행정력 낭비 방지 (안 제10조의3 제2항 삭제)
 - ※ 향후 필요 서식 등은 내부 방침 등으로 규정

〈 신·구조문 대비표(안) 〉

현 행	개 정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p> <p>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생략></p> <p>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3.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1부.</p> <p>[별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p>	<p>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보험료 지원) <제목개정></p> <p>① 시장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p> <p>② <삭제> [별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등 <삭제></p>

□ 추진일정

-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상정 ('25년 2월 제328회 임시회)
 - ※ '24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산재보험 지원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 회기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언 (기획경제위원회 왕정순 의원)
- 서울신용보증재단 및 근로복지공단 업무협약 및 사업 시행 ('25.3.)

□ 산재보험 비교

-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가 **선택**에 따라 가입하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으로 분류

< 근로자 산재보험과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비교 >

	근로자 산재보험('64~)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08~)
가입대상	· 모든 근로자	·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의무	· 의무 가입	· 입의 가입(기준보수액 1~12등급 중 선택)
보험료	· 사업주 가 근로자분 전액 부담	· 사업주 가 본인분 전액 부담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입의가입)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기준보수 : 가입자는 월 단위 기준보수액(1~12등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납부
- 보험료율 : 업종별 상이(업종별 산재발생빈도 반영)

※ 2025년 평균 산재보험료율 1.47%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4-77호)

□ 산업재해 범위

- 산업재해 :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재해에 따라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노동자의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을 말함

[산업재해]

- ▶ 업무상 사고: 사업주 지배 관리하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우연히 급격히 외부의 영향충돌 추락 감전 등으로 발생한 사고
- ▶ 업무상 질병: 업무상 과로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병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수행하다 발생한 근골격계 질병 화학 물질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등
- ▶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회사차 등을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

□ 보험 혜택

- 업무상 재해 발생시 보험급여(8가지) 내 급여신청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생활급여

【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4일 이상 요양 중인 신재근로자에 대한 진찰, 약제, 수술 및 치료비 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해 4일 이상 취업하지 못한 기간의 생계보호를 위해 평균임금의 70% 지급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부상에 대한 치료 후 장애가 남았을 경우 장해등급별 급여 지급
간병급여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경우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유족보상연금(평균임금 52~67% 상당) 매월 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이후에 중증 요양상태가 계속되면 그 등급에 따라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장례비	업무상의 이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직업생활급여	장해급여를 받는 신재노동자 중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 수당을 지급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

(단위 : 원)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등급	보수액(월)	평균임금(1일)
1등급	2,440,633	80,240	7등급	5,392,020	177,270
2등급	2,932,530	96,410	8등급	5,883,920	193,440
3등급	3,424,430	112,580	9등급	6,375,820	209,610
4등급	3,916,320	128,750	10등급	6,867,710	225,780
5등급	4,408,220	144,920	11등급	7,359,610	241,960
6등급	4,900,120	161,100	12등급	7,851,515	258,132

* 기준보수월액 :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67호(2024. 12. 30.)

< 기준보수 등급별 평균임금 의미 >

월 평균 보수 1등급(2,404,633원)인 사업주가 요양으로 5일간 휴업이 필요할 때
 ⇒ 휴업급여(280,840원) : 평균임금(80,240원)의 70%(56,168원)*5일

□ 보험 가입 현황

- 서울시 소상공인(1,567,916명*)중 산재보험 가입률** : 0.36%(5,622명)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본통계('22.12월말 기준)

** 근로복지공단 제공('24.11월말 기준)

- 근로자 없는 사업주(1인 사업주) 가입률 55% 수준으로 가장 높음
 - 사업자등록증 없는 1인 사업주(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필수 제출서류 아님

< 서울시 기준보수 등급별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현황('24. 11월) >

(단위 : 명)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합계
근로자 없는 사업주	1,835	216	196	112	118	88	41	28	49	23	5	409	3,120
근로자 10인 미만	822	321	199	138	140	176	111	74	85	49	33	354	2,502
소상공인 합계	2,657	537	395	250	258	264	152	102	134	72	38	763	5,622
분포	47%	10%	7%	4%	5%	5%	3%	2%	2%	1%	1%	14%	100%

[자료: 근로복지공단]

참 고 3

타 지자체 산재보험 지원사업 현황 및 추진근거

타 지자체 산재보험 지원사업 현황(2024년 기준)

구 분	지자체	지원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실적 (2023)	예산 (2024)
광역(6)	경상남도	'20.1.1.	1인 자영업자	• 1~4등급 50%(3년) • 5~8등급 40%(3년) • 9~12등급 30%(3년)	97백만원 / 610명	(고용, 산재 합산) 270백만원
	경상북도	'23.11.3.	1인 자영업자	• 전 등급 40%(1년)	-	140백만원
	대전광역시	'21.1.1.	1인 자영업자	• 전 등급 50%(3년)		(고용, 산재 합산) 80백만원
	강원도	'19.1.1.	1인 자영업자	• 1~12등급 50%		
	부산광역시	'20.1.1.	모든 소상공인	• 1~4등급 50%(3년) • 5~8등급 40%(3년) • 9~12등급 30%(3년)	(고용, 산재 합산) 300백만원 / 150명	(고용, 산재 합산) 300백만원
	광주광역시	'21.9.1.	1인 자영업자	• 전 등급 50%(3년)	(고용, 산재 합산) 150백만원/ 300명	(고용, 산재 합산) 140백만원
기초(1)	곡성군	'21.3.1.	1인 자영업자	• 1~4등급 50%(3년) • 5~8등급 40%(3년) • 9~12등급 30%(3년)		

타 지자체 사업 추진근거(참고)

- '산재보험 지원' 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으며, 사회보험료 혹은 사회안전망 지원 등의 포괄적 의미의 지원을 조례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로 함

【 대전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6조(소상공인 지원 사업) 시장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사회보험료 지원

【 경상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8조(지원 및 육성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7. 영세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편입 지원

【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 제8조(사업) 도지사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사회보험료 등 지원

